

제5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 추가 모집 공고

“우리 학교는 우리가 지킨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 캠퍼스 주변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생활을 도모하고자 대학생 순찰대를 추가 모집합니다. 제5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로 활동하실 열정 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

< 모집개요 >

- 모집기간 : '26. 8. 3.(월) ~ 23.(일) ※ 접수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 접수
- 모집대상 : 서울 소재 대학교 내 구성된 학생회, 동아리 등 단체
 - 해당 대학 재학생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제출서류
 - 단체소개서, 순찰계획서, 순찰대원 명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대원별) 각 1부
 - 담당자 전자우편(e-mail) 접수 : rosyu45@seoul.go.kr
- 심사기준 : 순찰대 규모, 순찰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순찰 대상지 적정성, 참여 적극성 등
- 발 표 : '26. 8. 26.(수) ※ 발표일은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게시 및 개별연락

< 활동내용 >

- 활동기간 : '26. 9월 ~ 12월 ※ 학교별 일정에 맞게 탄력 운영
- 주요역할 : 주야간 시간 대학 캠퍼스 내외 정기순찰, 범죄취약지역 제보 등
- 활동지원 : 순찰장비 지급, 범죄예방교육, 우수 순찰대·대원 시장표창, 자원봉사실적 인정 등
 - ※ 순찰대원은 「대학생 활동지침」 각 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 서울시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학생 순찰대 활동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순찰대(이하 '서울 대학생 순찰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서울 대학생 순찰대는 자치경찰위원회 선정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서울 대학생 순찰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활동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제4조(활동기간)

서울 대학생 순찰대는 선발된 당해연도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활동의사를 존중하여 활동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자치경찰위원회 선정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개시)

서울 대학생 순찰대는 선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순찰활동을 시작한다.

제6조(활동내용)

서울 대학생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마약·실종자, 주차장, 거동수상자 등 발견·신고
3. 범죄취약지역 진단 및 범죄예방 시설물(가로등, 긴급비상벨 등) 훼손·오작동 등 신고
4. 기타 생활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신고

제7조(1365 가입 및 귀책사유)

- ① 서울 대학생 순찰대원은 보험 처리를 위하여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1365 미가입 상태에서의 활동 중 사건·사고, 또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 서울시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서울 대학생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주1회 이상 순찰활동을 권장하며, 순찰 중 특이사항은 순찰앱에 기록한다.
2. 교육 받은 안전수칙에 따라 순찰활동을 하며, 최소 2인1조로 활동하며 단독순찰은 하지 않는다.
3. 사건·사고 발생 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순찰대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뒤 112·119, 120 및 교내 보안책임자에 즉시 연락한다.
4.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되,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을 준수한다.
 - 가. 피해자의 신상 및 사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한다.
 - 나. 피해자와 대면 시 강요나 질책을 지양하고 전문기관(경찰 등)에 인계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한다.
5. 음주 상태에서 순찰하지 않으며, 순찰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 및 음악 청취 등을 하지 않는다.
6. 순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순찰 안전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경광봉, 전자호루라기 등 순찰장비를 구비한다.
7. 영리 목적으로 서울 대학생 순찰대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서울 대학생 순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서울 대학생 순찰대가 아닌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그 밖에 서울 대학생 순찰대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 제8조 각 호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대하여 서울시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활동종료)

① 서울 대학생 순찰대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료된다.

1. 사고 등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대학생 순찰대 활동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3. 본인 당사자 의사에 따른 활동 종료 요청

②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활동규정 위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종료한다.

부칙 <제정 2026. 3. 12.> 이 지침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